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8회 제1차 정례회

# 검토보고서

2024. 6. 13.(목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	구청장



## 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4. 5. 24.
- 회부일 : 2024. 5. 28. (의안번호 : 24-73)

## 2. 제안이유

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,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2023년 12월 31일 고향사랑기부금 확정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수입의 증액으로 계획 변경.
- 기금전입금 112,950천원, 기타수입 71,853천원, 예치금 183,517천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,286천원을 감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

획을 변경.

#### 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#### 5. 검토보고

○ 본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,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본 변경안은 2023년 12월 31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확정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,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사료됨.

- 구체적으로, 기금전입금 112,950천원, 기타수입 71,853천원, 예치금 183,517천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,286천원을 감액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수입 변동을 반영하여 예산의 신뢰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고향사랑기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, 사회복지 증진, 주민 참여 확대, 재정 자립 지원,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상기하며, 기금 운용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**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**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